

'23-1학기 예비군 보류(전입)신고 안내



1. 신고대상 / 기간

대 상	기 간	비고	
학부 / 대학원생 중 군 전역자, 일반복학자	'23.2.1(수)~2.24(금)	- 22년 복학한 <u>재학생</u> 은 <u>우편 / FAX</u> <u>/ 방문신고</u> 만 가능(학교 포털신고 불가)	
신입생(학부/대학원)	'23.3.2(목)~3.10(금)	학적생성 이후 신고	

- * 학부졸업생 중 대학원 진학자는 반드시 신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
- ※ 우편/FAX신고 방법 : 포털(KUPID)-지식관리-학생지식-학생병무자료-전입신고 안내 참조
- ※ 전입 신고기간이후 개별신고자 중 1차훈련(4.3~17)법정통지서 발송기간 미달자는 훈련편성 불가

2. 신고요령

가. 복학생 : 가) 학교 포털에서 복학신청 시 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 병행

나) KUPID이용 : 정보생활→「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」란 이용 신고

나. 신입생 : 학적생성(3.2)이후 KUPID→정보생활→「예비군 전입(보류)신고」란 이용

3. 신고 비대상 (학생예비군 편성 제외자)

학기 초과자			ק ⊑
학부생	일반 및 전문대학원	특수대학원	공 통
9학기 부터 (거초하고 : 11하기)	5학기 부터	6학기 부터	휴학, 졸업유예,
(건축학과 : 11학기)	(석·박사통합 : 9학기)	(로스쿨 : 7학기)	수료(수료재학 포함)

- * 졸업·수료·휴학생 중 3.15일 이후에도 고려대 연대에 계속 소속된 자는 보류해소신고(학생예비군 해제)를 해야 함 [메일신고 주소: byong5720@korea.ac.kr / 성명, 내용(휴학 등), 일자, 생년월일, 학기이수 여부]
- 위에 열거한 학생예비군 비 대상자가 학생예비군 훈련 이수자로 훈련종결시 예비군법 제15조12항에 의거 보류해제 신고 위반으로 고발처리 됩니다.
- ※ 대학원생 중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소속 예비군은 전입신고 비대상입니다.(해당직장에 신고)
- ※ 의과대학 학적보유자는 고대 안암병원 의과중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문의(02-2286-1240)

4. 행정사항

- 가. 포털 전입신고 시 **현역신분** 또는 **전역 후 2주 이내**(군에서 병무청으로 전역자 명부 미도착), 군번오기 입력 시 <u>전입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</u>.
- 나. 신고기간 이후 전입신고는 우편, FAX 또는 방문 신고 하여야 합니다.
- 다. 학생예비군으로 소속변경 후 <u>예비군 홈페이지-나의 정보란에서</u> 전화번호 및 메일을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로 최신화 하여야만 공지사항을 정확히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.
- 라. 전입신고 관련 문의 및 안내 : (02)3290-1201 / 1204 (FAX : 02-923-3205)

고려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장

